| | |
|---|---|
| 의안번호 | 2218587 |
| 의 뢰 인 | 서명옥 의원 |
| 회 답 일 | 2026. 6. 23. |
| 추계번호 | 26C2319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Ⅰ. 재정수반요인[1)]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 고 |
|---|---|---|---|
| 1 | 안 제11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의무규정 |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11조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2)]는 소득수준 및 연령과 무관하게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및 인공수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일부와 관련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출산당 지원 횟수와 최대 지원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표 1] 참고)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하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1) 안 제11조제2항은 현재 '난임극복 지원'의 범위에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현행법에서는 재량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현행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 실시 자체가 재량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됨

실패·중단시에도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표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 구 분 | 지원 횟수 | 지원 금액 |
|---|---|---|
| 체외수정(신선배아) | 출산당 최대 20회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해당액(최대 110만원) |
| 체외수정(동결배아) |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해당액(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출산당 최대 5회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해당액(최대 30만원) |
| (비급여) 배아동결비 | - | 최대 30만원 |
| (비급여) 착상유도제 | - | 최대 20만원 |
| (비급여) 유산방지제 | - | 최대 20만원 |
| (비급여) 냉동난자 해동비 | - | 최대 30만원 |

주: 1. 지원횟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와 동일
2. 비급여의 경우 체외수정·인공수정의 지원 상한 내에서 지원됨
자료: 보건복지부의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실시함([표 2] 참고)

[표 2] 주요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현황(2026년 기준)

| 지 역 | 지원 횟수 |
|---|---|
| 경상북도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40만원 지원<br>*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자에 대해서도 지원(단, 신청일에 경북에 주민등록 주소를 6개월 이상 둔 난임부부 대상) |
| 전라남도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자에 대해서도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br>*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
| 광주광역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자에 대해서도 연 4회 추가 지원<br>*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20~15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7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30만원 지원 |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현행 지원을 초과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의 평균 난임시술 시행 횟수 및 금액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

○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난임시술 수가코드가 청구된 명세서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자의 총 시술건은 95.7만건, 총급여비용은 4,457.6억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 시술건은 1,411건, 총급여비용은 7.06억원으로 집계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직무대리) |
|---|---|---|
| 사회비용추계과 | 김우림 | 이제정 |

❑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김우림 | 02-6788-3738 | wrkim@nabo.go.kr |